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045호
2025. 2. 24.(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 등

[규 칙]

제469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	2
---	---

자치법규 등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690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5년 2월 24일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·재정기획관·기획담당관·조직담당관·약자동행담당관·창의행정담당관·법무담당관·법률지원담당관·예산담당관·재정담당관·평가담당관·공기업담당관”을 “정책기획관·재정기획관·기획담당관·조직담당관·평가담당관·창의행정담당관·법무담당관·법률지원담당관·예산담당관·재정담당관·약자동행담당관·공기업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담당관·약자동행담당관·창의행정담당관·법무담당관·법률지원담당관·예산담당관·재정담당관·평가담당관·공기업담당관”을 “기획담당관·평가담당관·창의행정담당관·법무담당관·법률지원담당관·예산담당관·재정담당관·약자동행담당관·공기업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약자동행”을 “성과평가”로, “성과평가”를 “약자동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7항으로 한다.

제12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어르신복지시설(일자리지원기관, 여가복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, 학대피해 전용쉼터)에 관한 사항

제12조제1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어르신복지시설(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)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-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관사무 및 직제순 조정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관 운영의 업무연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소관사무 및 직제순 조정

- (기획조정실) 평가담당관을 ‘재정기획관’ 산하에서 ‘정책기획관’ 산하로 이관하고, 약자동행담당관을 ‘정책기획관’ 산하에서 ‘재정기획관’ 산하로 이관
- (복지실) 어르신 관련 ‘일자리지원기관’ · ‘학대피해 전용쉼터’ 업무를 어르신복지과 소관사무로 명시하고, 어르신복지과 업무 중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‘노인의료복지시설’ · ‘재가노인복지시설’ 업무를 돌봄복지과로 이관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